

#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11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1. 17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등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지급 기준과 관광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관광진흥사업 추가(안 제7조)
- 나. 관광기념품 등 지급 신설(안 제8조)
- 나. 포상 신설(안 제9조)
- 다. 법제처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관광진흥 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기념품 지급 및 관광발전 기여자 포상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 안 제8조의 관광기념품 및 관광홍보물품의 종류와 지급대상자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.